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5-54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5.2.27. ~ 2025.3.12. (14일간)
-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5조제2항
-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1	김*오	1967.3.6.	충청북도 단양군 삼봉로 41, 102동 605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45		가산금 4만5천원
2	이*훈	1973.9.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5번길 25, 1층 101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251		가산금 6만원

-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증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8. 납부 안내
 -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끝.